

이천가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이 천 가 산 초 등 학 교

이천가산초등학교 학교규칙

利川柯山初等學校規則

제정	2006년 4월 3일	제정
1차개정	2007년 4월 2일	개정
2차개정	2012년 4월 12일	개정
3차개정	2013년 4월 25일	개정
4차개정	2015년 4월 3일	개정
5차개정	2017년 6월 25일	개정
6차개정	2018년 4월 11일	개정
7차개정	2020년 5월 28일	개정
8차개정	2022년 11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에 의거 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교는 『배움이 통통(通統) 뛰는(UP) 행복한 학교』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 ① 본교는 '이천가산초등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라 한다.
- ②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본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라 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길 2065-112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 · 학년제 · 학기 및 휴업일 등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및 학기)

- ①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둘째 주 금요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학교장이 지정한 계절방학
 7.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 ② 제①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방학기간은 제1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③ 제①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①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⑤ 제①항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제10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 및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또는 도·농간 교류학습의 기간은 연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그 이상의 기간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1개월 이내에서 연장 운
영 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받아 연간 20일로 한다.

3. 교류학습 실시 후에는 위탁학교의 생활기록 상황을 통보 받고,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 결재 필요)
5.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7.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운영 단위 규정은 1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4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출발일 4시간+도착일4시간=1일)
9.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10.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기타 체험 활동(학교장 승인),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1.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12. 결과처리-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해당 학년도,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13. 제 5항 2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⑥ 현장 체험 학습

1. 계절별, 학년별 등으로 분산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한다.
2. 학생들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호화 여행 등을 지양하고, 교사의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필요 경비는 학교예산에 반영한다.

3. 불참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실화 한다.

4. 기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방과후 교육)

- ① 교과부와 교육청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의거 방과후 시간에 특기 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교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과목, 강사선정, 기간, 소요경비, 운영방안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참가희망자의 선정은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세부 지침을 따른다.
- ④ 강사료, 준비물품 등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방과후 교육활동 특정경비 징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정경비 세부지침에 의한다.
- ⑥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선정 절차 및 제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선정한다.

제14조 (학습부적응아 등에 대한 교육)

-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16조 (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제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 6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무단결석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10.18.개정, 2017.3.1. 시행, 이하 시행령)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 ②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③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지역의 관할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학부모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한다.
- ④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제20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 ⑥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만 5세 아동으로서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내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⑨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체류가 장기인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아동
- ⑩ 기타 법령이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아동
- ⑪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때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3.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4.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출석 독촉
 - 5. 미취학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1)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 :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취학 독려,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한다.
 - 2) 입학기일 이후 3일~입학기일 이후 9일 : 가정방문 실시,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한다.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한다.

제23조 (전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면·동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 (재취학,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명예졸업)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① 심의 주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② 심의 절차 :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

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②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③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28조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 제①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
- ② 학교의 장이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업무)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6479호)」에 따른다.

제 8 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31조 (기타비용의 징수)

-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제32조 (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인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4조 【학생표창심사위원회】

- ① 학교장은 학생표창심사위원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 ② 학생표창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 ③ 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년군(1·2, 3·4, 5·6)별로 1인씩 교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①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①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동법 시행령(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장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제39조 (학부모회 활동)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가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교권 및 학생 인권보호

제40조 (교권 및 학생 인권 보호) 본교 학생의 인권 및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행위(폭력, 폭언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은 즉각 경찰에 고발한다. 또한 언론 기관의 본교 내 출입 및 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 13 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통합학급 담임 배정

제41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통합 학급 담임배정) 본교 특수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담임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학급의 담임 배정은 본교 통합 학급 담임 배정 인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 14 장 학업중단 예방

제43조 (학업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15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4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발의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의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추천 교원 위원 2명(교감 당연직),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부모위원 1명,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위원 1명, 학생자치회 추천 학생위원 1명, 지역의 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지역의 전문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며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위촉할 지역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 2.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3.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4. 개정 시안 수립
 -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6.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학교규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 ① 본 학교규칙은 2006년 4월 3일 제정
- ② (1차개정) 2007년 4월 2일 개정
- ③ (2차개정) 2012년 4월 12일 개정
- ④ (3차개정) 2013년 4월 25일 개정
- ⑤ (4차개정) 2015년 4월 3일 개정
- ⑥ (5차개정) 2017년 6월 25일 개정

- ⑦ (6차개정) 2018년 4월 11일 개정
- ⑧ (7차개정) 2020년 5월 28일 개정
- ⑨ (8차개정) 2022년 11월 11일 개정